

# 건설업 면허기준상 기술자 보유에 대한 유권해석

‘건설기술자는 근무하고 있는 건설회사의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당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면허기준에 적합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대양수중건설(주)가 건설부에 질의한 “건설업 면허기준이 되는 건설기술자는 소속 건설회사의 소재지에 주소를 두어야만 면허기준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건설부는 “건설업 면허기준이 되는 건설기술자는 소속 건설회사의 소재지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영문규정이 없으므로 근무하고 있는 건설회사의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당해 회사에

## 실적신고시 누락된 부분은 차기년도 도급한도액 결정시 반영

상시근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면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또 대양수중건설(주)가 함께 질의한 “매년 2월15일까지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함에 있어 실적신고시 누락된 실적을 추가로 신고하였을 경우 도급한도액을 변경하여 결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도급한도액을 결정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매년 2월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바, 이미 결정된 도급한도액은 실적신고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누락된 공사실적은 다음년도 공사실적 신고시 신고하면 차년도 도급한도액 결정시 반영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